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28

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정을호·추미애·정태호

전현희 · 진성준 · 강유정

강경숙 · 김준혁 · 백승아

조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,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(이하 "투자심사"라 함)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·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·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.

이에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투자심사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투자심사 회의록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투자심사) ① ~ ④ (생	제37조(투자심사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
	의뢰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
	시・도지사는 투자심사를 할
	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 의
	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때에
	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<u>⑤</u> · <u>⑥</u> (생 략)	$\underline{6}\cdot \underline{7}$ (현행 제 5 항 및 제 6 항
	과 같음)